

## 거소투표란?

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투표소를 갈 수 없거나 병원·요양소·수용소·교도소·구치소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### 신고기간

2018. 5. 22. ~ 5. 26. (5일간)



### 신고방법

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·시·군(읍·면·동 포함)의 장애인에게 5월 26일(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)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

## 거소투표 절차

### 1 거소투표 신고



### 2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수령



### 3 기관·시설 기표소 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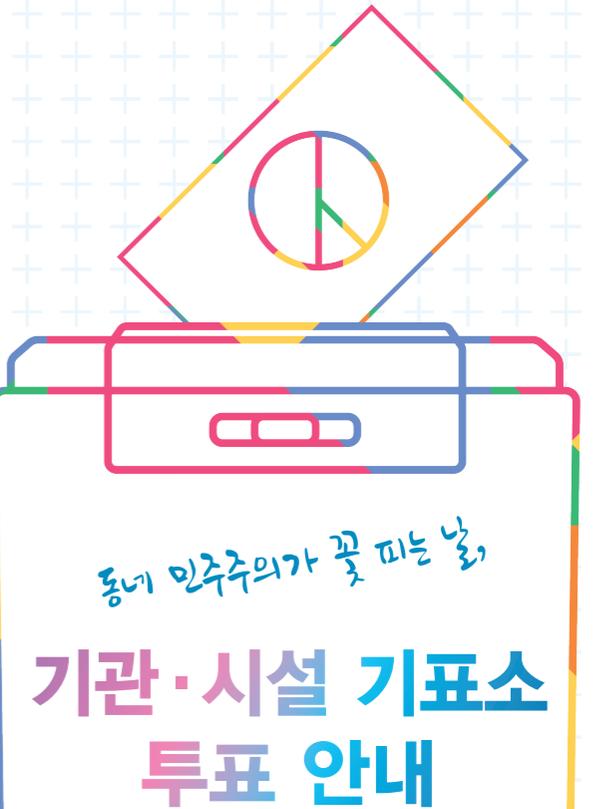


### 4 우체통 투입 (기관·시설 기표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)



더 멀리보고, 더 부지런히 뛰는  
선거관리위원회,  
국민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

6.13. 지방선거는 **한국선거방송** (etv.go.kr)과 함께  
- KT 올레TV 273번, 티브로드 205번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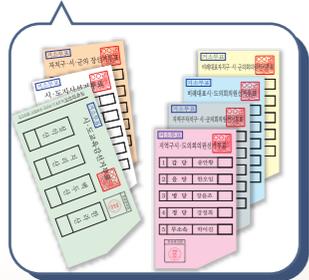
# 기관·시설 기표소 투표! 이렇게 합니다.

## 1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확인

기관·시설 기표소에 가기 전에 자신이 수령한 **거소투표용지**와 **회송용봉투**를 확인하세요.



투표용지가 **총 7장**인지 확인하세요.  
(예외 : 세종특별자치시 4장, 제주특별자치도 5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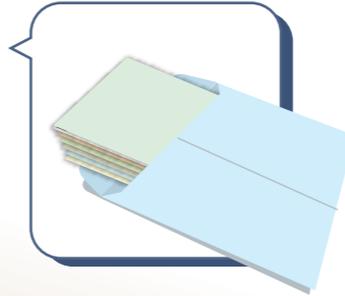


## 2 기표 및 투표함 투입

기표소에서 **기표용구로 기표**  
(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 투표)



투표지를 **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기**



· 거동이 불편하여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 또는 자신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.



# 기표소 설치

## 기표소 설치 대상 기관·시설

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·요양소·수용소·교도소·구치소 및 장애인거주시설



## 기관·시설 기표소 운영일시 및 장소

기관·시설의 장이 거소투표신고인에게 별도 안내 (해당 기관·시설의 장이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기표소 운영 일시 및 장소 등)

# 거소투표 시 유의사항

-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.
- 거소투표하는 사람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-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.
- 선거인의 투표비밀을 침해하면 안됩니다.

## 거소투표 관련 위반 시 처벌

-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,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
  - ☞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(공직선거법 제247조)
-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
  - ☞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(공직선거법 제248조)